

서울고등법원 2022. 4. 14 선고 2021나203595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22. 4. 14 선고 2021나2035958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9. 3 선고 2019가합576361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한국무역보험공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

담당변호사 성창재, 이진성, 유장미

피고(탈퇴) 겸 피고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

중소기업은행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율촌

담당변호사 김은섭, 문일봉, 성소영, 이정균, 이희중

피고승계참가인, 피항소인

A 유한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율촌

담당변호사 김은섭, 문일봉, 성소영, 이정균, 이희중

변론종결 2022. 3. 10.

판결선고 2022. 4. 14.

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9. 3. 선고 2019가합576361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(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)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B 주식회사와 피고(탈퇴) 겸 피고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 사이에 파주시 C 공장용지 865㎡에 관하여 2018. 11. 12. 체결된 각 근저당권 추가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, 아래의 ‘2. 고치는 부분’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고치는 부분

○ 제6면 제17행 아래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.

순번	설정 일자	예금 종류	담보설정 한도액	2018. 11. 15. 기준 예금담보액
1	2016. 11. 11.	정기예금	110,000,000원	102,596,834원
2	2017. 7. 7.	외화예금	USD 184,426	192,646,091원
3	2018. 4. 17.	외화예금	USD 142,092	147,140,744원
4	2018. 8. 1.	기업부금	1,320,000,000원	400,197,494원
합계				842,581,163원(1USD=1,132원)

○ 제7면 제1행의 ‘4억 45만 원’을 ‘4억 49만 5,000원’으로, 같은 면 제13행의 ‘매출액의’를

‘매출액이’로 각 고친다.

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.

재판장 판사 채동수, 판사 송영승, 판사 이현우